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자 연 공 원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자연공원 내 토지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에 ‘해당 토지의 사용·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’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자연공원법」이 개정(법률 제17425호, 2020. 6. 9. 공포, 2020. 12. 10. 시행)됨에 따라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

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기준에 농자재의 보관 등을 위한 농막을 추가하고, 어촌·어항시설에 대한 경미한 보수는 허가 대신 신고로 변경하여 주민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.

또한 공원시설 중 대피소의 범주를 보호 및 안전시설로 변경하고, 어려운 한자어,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는 등 현행 법령·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공원시설 범주 변경(안 제2조, 별표1의2)

대피소의 본래 기능인 탐방객 안전에 부합하도록 대피소의 공원시설 범주를 휴양 및 편의시설에서 보호 및 안전시설로 변경

나.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추가(안 제14조의3)

자연공원 보전·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기준에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막을 추가

다. 공원구역에서 허가 대신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의 확대(안 제18조)

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,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어촌·어항시설에 대한 경미한 보수는 허가 대신 신고로 완화

라. 토지매수청구 판단기준 개선(안 제43조)

- 1) 자연공원 내 토지소유주의 매수청구권 확대를 위해 법 제77조에 따른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중 개별공시지가 요건(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자연공원 안의 동일한 용도지구에 있는 읍·면·동의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퍼센트 미만일 것)을 삭제
- 2) 법 제77조제1항 개정예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추가된 ‘사용 또는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’의 판정기준 신설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사방·호안·방화·방책·방재·조경시설”을 “사방·호안·방화·방책·방재·조경시설·대피소”로, “보호하고”를 “보호하거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대피소, 공중화장실”을 “공중화장실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법 제11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제9조제2항 중 “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법 제11조제3항에 따라”로, “수렴하여야”를 “수렴해야”로 한다.

제1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설치”를 “설치와 범위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국방상·공익상”을 “국방 또는 공익을 위해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국방상”을 “국방을 위해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공익상”을 “공익을 위해”로 한다.

4. 「농지법 시행령」 제2조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농막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

가. 주거가 아닌 용도일 것

나.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일 것

다. 점용기간은 3년 이내일 것. 다만,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라. 그 밖에 자연공원의 보전·관리를 위하여 경관 및 오수관리 등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적합할 것

제18조제5호 중 “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호에”를 “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제1호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제14조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

가. 해안도로·선착장·제방·방파제·방사제(防砂堤) 등 연안시설의 보수를 위한 행위

나. 해중 또는 해상에 설치된 고정시설물의 보수를 위한 행위

다. 「어촌·어항법」 제2조제2호나목 사업과 관련한 하수처리시설 등 어촌환경시설의 보수를 위한 행위

제19조제1항제8호 중 “자로서”를 “사람으로서”로, “아니하는”을 “않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의2 중 “자로서”를 “사람으로서”로, “자를”을 “사람을”로, “행하는”을 “하는”으로 한다.

제42조제1항 중 ““군사상 또는 공익상”을 ““군사목적 또는 공익을 위하여”로,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”라 함은 제4조 각호의 1”을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

항 중 “의하여 국유”를 “따라 국유”로, “처분하고자 하는”을 “처분하려는”으로, “협의하여야”를 “협의해야”로 한다.

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3조(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)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(이하 “매수대상토지”라 한다)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매수대상토지의 효용감소, 사용·수익이 불가능에 대하여 매수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.

1.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: 매수를 청구할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자연공원 지정 이전의 지목(매수청구인이 자연공원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)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것
2. 사용·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: 법 제28조로 인해 해당 토지의 사용·수익이 불가능할 것

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법 제77조제1항에 따라”로, “청구하고자 하는”을 “청구하려는”으로,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, “제43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43조에 따른”으로, “한한다)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”를 “한정한다)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해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2항에 따라”로, “때에는 감정

평가업자”를 “때에는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”으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“1월”을 “1개월”로, “감정평가의뢰사실을 통보하여야”를 “감정평가 의뢰사실을 통보해야”로 한다.

③제2항에 따른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. 다만,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대상 토지와 인근지역 내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를 비교하여 산정한다.

별표 1의2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분		규모
공공시설	공원사무소	부지면적 2,000제곱미터 이하
	매표소	부지면적 100제곱미터 이하
	탐방안내소	부지면적 4,000제곱미터 이하
보호 및 안전시설	대피소	부지면적 2,000제곱미터 이하
	대피소 이외의 시설	별도의 제한규모 없음
휴양 및 편의시설	야영장	부지면적 6,000제곱미터 이하
	휴게소	부지면적 1,000제곱미터 이하
	전망대	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하
	야생동물관찰대	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하
	공중화장실	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하
교통·운송시설	도로	2차로 이하, 폭 12미터 이하(일방통행방식의 지하차도 및 터널은 편도 2차로 이하, 폭 12미터 이하로 하며 구난·대피공간을 추가할 수 있음)
	탐방로	폭 3미터 이하, 차량 통과구간은 폭 5미터 이하
	교량	폭 12미터 이하
	궤도	2킬로미터 이하, 50명용 이하

	(삭도는 제외한다)	
	삭도	5킬로미터 이하, 50명용 이하
	선착장	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
	헬기장	부지면적 400제곱미터 이하
공원사업		공원구역에서 기존시설의 이전·철거·개수

비고: 교통·운송시설 중 탐방로(국립공원의 탐방로만 해당한다)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지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4조의3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공원시설) 「자연공원법」 (이하 “법“이라 한다) 제2조제1 0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“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	제2조(공원시설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사방·호안·방화·방책·방 재·조경시설</u> 등 공원자원을 <u>보호하고</u> , 탐방자의 안전을 도 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	2. <u>사방·호안·방화·방책·방 재·조경시설·대피소</u> ----- <u>보호하거나</u> ----- -----
2의2. (생략)	2의2. (현행과 같음)
3. 체육시설(골프장, 골프연습장 및 스키장은 제외한다), 유선 장(遊船場), 수상레저기구 계 류시설, 광장, 야영장, 청소년 수련시설, 유어장(遊漁場), 전 망대, 야생동물 관찰대, 해중 (海中) 관찰대, 휴게소, <u>대피 소, 공중화장실</u> 등의 휴양 및 편의시설	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공중 화장실</u> ----- -----
4. ~ 8. (생략)	4. ~ 8. (현행과 같음)
제9조(공원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 차 등) ① <u>법 제11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공원기본계획의 내용</u>	제9조(공원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 차 등) ① <u>법 제11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</u>

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~ 3. (생략)

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시·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
제14조의3(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) ① (생략)

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농지 또는 초지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-----

----- 수렴해야 -----
--.

제14조의3(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설치와 범위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「농지법 시행령」 제2조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농막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

가. 주거가 아닌 용도일 것

나.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일 것

다. 점용기간은 3년 이내일 것. 다만,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경우

③・④ (생략) 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아목에 따른 <u>국방상·공익상</u>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 한다. 1. <u>국방상</u>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가.·나. (생략) 2. <u>공익상</u>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가. ~ 마. (생략) ⑥ ~ ⑧ (생략) 제18조(신고사항)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. 1. ~ 4. (생략)	<u>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u> <u>라. 그 밖에 자연공원의 보전·관리를 위하여 경관 및 오수관리 등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적합할 것</u> ③・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 <u>국방 또는 공익을 위해</u> 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<u>국방을 위해</u> ----- ----- 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2. <u>공익을 위해</u> ----- ----- 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 ⑥ ~ ⑧ (현행과 같음) 제18조(신고사항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
---	--

5. 제14조제2호에 따른 섬지역
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하여
그 섬지역의 공원구역에 「장
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
제1호에 따른 개인묘지를 설
치하는 행위

<신 설>

제19조(신고생략사항) ①법 제23
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
에 따라 신고를 생략하고 할 수
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.

1. ~ 7. (생 략)

8. 자연공원 안의 거주민(공원

5. -----

----- 「장
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
제1항제1호 -----

6. 제14조에 따른 해안 및 섬지
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
위

가. 해안도로·선착장·제방
· 방파제·방사제(防砂堤)
등 연안시설의 보수를 위
한 행위

나. 해중 또는 해상에 설치된
고정시설물의 보수를 위한
행위

다. 「어촌·어항법」 제2조
제2호나목 사업과 관련한
하수처리시설 등 어촌환경
시설의 보수를 위한 행위

제19조(신고생략사항) ①-----

---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-----

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
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
말하며, 거주민이 협의체를 구
성하는 경우에는 협의체를 포
함한다)이 공원관리청과 자발
적 협약을 체결하여 공원자연
환경지구·공원마을지구에서
공원자원을 훼손하지 아니하
는 범위안에서 약초·버섯·
산나물·해산물 등을 채취하
는 행위

8의2. 법 제18조제2항제1호사목
에 따라 거주민(공원구역 안
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
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)이
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
체결하여 공원자연보존지구
에서 행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

9. ~ 11. (생 략)

② (생 략)

제42조(처분제한) ①법 제75조
에서 “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
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
경우”라 함은 제4조 각호의 1에
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②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

----- 사람으
로서 -----

----- 않는 --

8의2. -----

----- 사람으로서 -----

----- 사람을 -----

-- 하는 -----

9. ~ 11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2조(처분제한) ①-----
-- “군사목적 또는 공익을 위하
여 ----- 대통령령으로 정하
는 경우”란 제4조 각 호의 어느
하나-----.

②----- 따라 국

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관리청은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43조(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)

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(이하 “매수대상토지”라 한다)의 판정기준은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로서 매수청구당시 매수대상토지를 자연공원 지정 이전의 지목(매수청구인이 공원구역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구역지정 이전의 실제용도를 지목으로 본다)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일 현재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자연공원안의 동일한 용도지구에 있는 읍·면·동의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.

유 ----- 처분하려는 ----- 협의회야 -----.

제43조(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)

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(이하 “매수대상토지”라 한다)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매수대상토지의 효용감소, 사용·수익이 불가능에 대하여 매수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.

1.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: 매수를 청구할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자연공원 지정 이전의 지목(매수청구인이 자연공원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)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것

2. 사용·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: 법 제28조로 인해 해당 토지의 사용·수익이 불가

제44조(매수절차 등) ①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매수청구서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공원관리청은 매수대상토지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(이하 “매수기준”이라 한다)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(매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)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.

능할 것

제44조(매수절차 등) ①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-----
 ----- 청구하려는 -----

 ----- 제출
해야 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제1항에 따라 -----

 ----- 제43조에 따른 -----

 ----- 한정한다)을 매수청구
인에게 통보해야 -----.

③제2항에 따른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. 다만,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대상 토지와 인근지역 내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를 비교하여 산정한다.

④공원관리청은 <u>제2항의 규정</u> <u>에 의하여</u> 매수예상가격을 통보 한 <u>때에는 감정평가업자</u>에게 대 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 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, 이 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감 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하며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<u>1월</u> 이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<u>감정</u> <u>평가의뢰사실을 통보하여야</u> 한 다.	④----- <u>제2항에 따라</u> -- ----- -- <u>때에는 「감정평가 및 감정</u> <u>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</u> <u>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</u>---- ----- ----. ----- ----- ----- <u>1개</u> <u>월</u> ----- <u>감정평</u> <u>가 의뢰사실을 통보해야</u> ----- --.
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자연공원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312